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주민의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5.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명칭)

- (기 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변 경)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 조부터 제4조까지)

다.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또는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안건 회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 등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9조)
- 바. 공시송달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의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타당히 마련함.
- 이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조례의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25. 1. 1.시행)」에 따라 전부개정 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적합히 마련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의 ‘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충청북도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 설치운영, 회의 소집 등의 전반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부 절차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전문위원의 선정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 납부 수수료, 공시송달 방법, 수당 등을 규정함.

#### 다. 조례의 기술적인 사항

- 전부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함.
- 조례안 예고('24. 11. 8.~11. 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침해되는 사항 없이 목적에 맞게 적합한 내용을 규정함.

- 분과위원회의 경우 상위법령 상의 중앙위원회(100명 이내 구성) 기준을 감안한다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위원회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인원(9명 이상 15명 이내)으로 규정하였다고 사료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고안"은 분과위원회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3552, 2024.8.19.)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정당한 절차를 따름.
-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